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ning and Tasks of Vitalizing Private Archives

: Focused on Maeul-community Archives

손동유(Sohn, Dong You)**

1.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재인식
2. 민간 영역 아카이빙의 현황
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의 역할
4. 맺음말

* 이 논문은 한국기록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민간 아카이브 정책의 전환」과 국가기록원에서 주최한 ‘2020년 기록의 날’ 기념 학술회의 “기록공동체 지평의 확장, 민간아카이브”에서 기조강연으로 발표한 「민간아카이브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기초로 보완한 것임.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장(ndawn@naver.com).

■ 투고일: 2020년 06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7월 13일 ■ 최종확정일: 2020년 07월 20일

■ 기록학연구 65, 89-108,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초록〉

기록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록관리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전자기록환경의 도래,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 민간기록물관리의 중요성 등은 2006년 기록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전자기록관리분야와 대통령기록관리 분야는 과제와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분야의 아카이빙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에 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의 전국적 움직임은 기록관리계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 사회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견제관계를 이룰 때 발전하게 된다. 아카이빙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한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민간 아카이브,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지방기록관, 촉진법, 문화자원

〈Abstract〉

Twenty years after the Records Management Act was first enacted, the archiving environment has changed a lot. The advent of the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the importance of managing private records have been a direct background to the 2006 revis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Act. The field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the field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have challenges and limitations, but have been steadily developing. However, in the private sector, archiving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voluntary activity. Now the maeul-community is calling for a response from the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A society develops wh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form healthy check-ups. In the archiving

field, it must also become active through cooperation.

Keywords : private archiving, maeul-community archives, loca archives, facilitation act, cultural ources

1.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재인식

민간 기록관리란 민간영역에서 생산,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그것이 유지, 운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이라고 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에서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뜻한다.¹⁾

법상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행정력을 구현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일컫고 국가기록관리체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영역에 대하여 동법에서 뚜렷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과 상대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을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민간 영역의 범주, 관리영역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외의 영역을 ‘민간영역’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1)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주체는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과 문화원,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각종 중간지원조직, 지역이나 가치 중심의 다양한 공동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및 개인 등을 포괄한다.

그간 민간분야 기록관리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작되거나 활성화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조응하려는 학계의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간'이라는 표현에는 법이나 제도 등과는 무관하게 일반인들의 삶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상과 활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은 민간영역의 상징적 단위로 이해되기도 한다. 마을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면서도 딱히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고, 쉬고, 즐기는 장으로서 일상생활의 현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마을, 마을공동체와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이영남에 의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었다(이영남 2008, 221-254).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까우며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 마을역사관, 마을치유센터, 마을창업센터 등을 포괄하는 '마을 아르페'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국가나 중앙의 거시적 차원의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록학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진출의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익한은 '마을은 공동체적 삶의 말단 현장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기반 구조를 공고히 해가기 위한 민주주의의 말단 현장'이라고 정의하고 현장민주주의·생활민주주의 실천의 한 형태로 마을아카이빙운동을 제안했다(김익한 2010, 1-24).

우리사회는 근현대 시기 식민지와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마을공동체는 대부분 해체되었고, 성장을 위주로 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개인주의, 상실감, 소외감 등을 직면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되었다. 다분히 기존 삶에 대한 성찰적 성격을 가진 한 이러한 양상은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등장했다. 이들의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동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²⁾

물론 도시에서 최근에 형성되어 온 마을공동체에 비해,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전통 마을은 사뭇 다른 모습을 띤다.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 부분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단위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공통점이라면 도시형 마을공동체나 농, 산, 어촌의 마을공동체의 경우 모두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마을이라고 칭하며 삶의 기본적인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복원과 지속을 추구하는 현상은 분명 우리사회에서 전에 없었던 하나의 운동이자,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아카이빙 한다는 것은 마을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흔적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아카이빙 한다는 것이다. 즉, 마을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양질의 변화 모두 아카이빙의 대상이다. 마을공동체가 미래지향적 삶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또한 미래지향적 설계가 필요하고, ‘기록은 과거의 것’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를 담아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주제,

2) 현재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는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공약에 포함하였고, 당선 이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상기록의 특성, 목적, 지향 등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방법과는 다른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행정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기록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 방법론에 대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기록관리(아카이빙)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더이상 행정기록 위주의 공공기록관리가 국가 기록관리의 중심이 되고,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마을공동체는 우리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주체가 되어가고 있고, 이 영역에 대한 아카이빙이 사회적으로 아카이빙의 한 축을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 또한 구체화 되어 왔다. 광건홍은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학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로서 ‘일상 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광건홍 2011, 3-33) 윤은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현재의 운동이며, 공동체 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며, 이를 통해 그들의 권리와 의미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록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기록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킴으로서 현 사회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의미 부여하였다(윤은하 2012, 3-37)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기록관리 활성화차원에서 민간기록관리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는 물론이고 정당, 기업, 문화재단, 문화원, 중간

지원조직, NGO, NPO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조직 중에 정당의 경우에는 공공기록관리법에서 포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 NGO, NPO 등은 공고한 조직과 조직운동을 위한 행정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며 전업 직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방법을 상당부분 차용할 수도 있고, 조직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기록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다. 다만, 마을공동체의 경우 사회적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임의적 조직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체의 의지로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가면서 아카이빙을 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주로 마을공동체의 기록관리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민간 영역 아카이빙의 현황

공공영역 이외의 분야에서 아카이빙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매우 다양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도 미미한 관계로 대략적인 상황만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당의 경우 스스로 기록관리의 필요성이나 의지를 보인 경우는 별로 없다. 1955년 창당한 민주당을 시초로³⁾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60년사를 펴낸 것 말고는 평소에 당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보존하면서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야당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으며, 정당의 역사를 정리하거나 편찬한 경우도 없다. 정당은 국고의 투입규모와 비율,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록관리법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https://theminjoo.kr/introduce/history> 더불어민주당 '우리의 발자취' 참조

기업의 경우 업무환경 대부분이 디지털 환경으로 정착되면서 PC 등 전자적 기기와 방식을 통해 기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으며 업무상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용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기록은 현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사외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기업의 사료를 별도로 관리하여 전시관, 책자, CF 등을 통해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⁴⁾ 이는 주로 홍보부서에서 관리한다. 이처럼 현용기록과 사료를 관리하는 배경과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기업기록 아카이빙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NGO나 NPO등에서는 조직의 지향과 목적을 널리 알리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모색과 시도를 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공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기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곤 하는데⁵⁾, 생산-관리(보존)-활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의 의지에 비해 아카이빙 여건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간조직으로서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 및 문화원 등은 기록관리법 제3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생산, 관리 및 보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용기록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기록관리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공동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의 도

4) 국내에서 이름이 알려진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부분 자사의 사료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환경운동연합(<http://kfem.or.kr>),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한국여성단체연합(<http://www.women21.or.kr>), 사랑의열매(<https://chest.or.kr>), 아름다운재단(<https://beautifulfund.org>) 등 대표적인 관련기관들의 홈페이지는 현황파악에 도움을 준다.

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등에서 기록 수집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를 하거나 책자를 발간하곤 하는데, 수집된 기록물의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많은 지역에서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강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1회적인 특강이 아닌 최소 4회차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시흥시청에서 운영하는 시흥아카데미에서 2015년 ‘마을기록학교’를 개설한 것이 대표적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에 있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인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출판, 전시 등 아카이빙 활동의 결과를 취합하여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아카이빙(수집, 생산, 관리 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있다 하더라도 즉자적인 논의일 뿐 중장기적인 아카이빙 계획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이 없으니 활동을 시작 할 때 마다 대상을 즉자적으로 결정하거나, 매번 비슷한 논의를 반복하게 된다.

일상과 공동체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생산하는 기록에 대한 논의가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사진, 영상, 회의록, 자료집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일상 생활용품이나 생활도구, 구성원들 간에 주고받은 소소한 메시지들도 대상이 된다. 실로 일상 아카이빙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물론, 모든 것을 아카이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치기준을 정해서 계획을 갖고 아카이빙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이다.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고, 수집 또는 생산과정의 공정을 설계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지 정하고, 원활하게 공유하며 기록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학 이론, 경험적 노하우,

현실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활동가들의 아카이빙 근거지로 활용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⁶⁾ 이들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나 기관에서 공간을 제공하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민 기록활동가를 양성하여 조직화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은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으로 두지만, 프로그램 이후의 활동까지 계획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꾸려 아카이빙 활동을 해 나가는 경우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⁷⁾ 이들은 자유로운 토론과 기획을 통해 일상을 아카이빙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원, 활동 및 기록물 보관공간, 방법론 등의 문제에 부딪히곤 한다. 이처럼 성과와 한계를 모두 보이며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주체가 되거나, 지역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아카이빙 활동을 해 나가게 된 것은 길게 봐도 약 10년 이내에 만나게 된 현상이

6) 시흥시의 경우 사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 ‘기억창고’라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군 포문화재단은 수리산 상상마을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기록저장소’를 설치하였으며, 청주시 산남동 퀸덤아파트 주민들은 ‘두껍말기록단’을 조직하고 단지내 ‘퀸덤도서관’ 내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문화재단의 경우 마을기록활동가 교육 후 활동결과를 보관하고 간단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재단 산하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개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

7) 군포의 경우 군포문화재단에서 2018년부터 2개년에 걸쳐 초급-중급의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급 이수자들 중심으로 ‘우동(우리동네기록학교 동아리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고, 청주의 ‘두껍말기록단’도 자발적인 기록활동 모임이다. 또한, 시흥시의 2015년 시흥시에서 주관하는 시흥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를 이수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뚝’이라는 조직이 결성되어, 시에서 제공한 ‘기억창고’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성북구의 정릉마을 주민들은 2012년 자발적인 사진수집 이벤트를 기점으로 다양한 활동과 관에서 공모하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아카이빙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소수의 활동가 중심으로 그때 그때 사안별로 모여 활동을 하면서 청수도서관 등 지역도서관 및 단체와도 협력해 왔는데, 지난 2018년에는 참여의 폭을 넓혀 ‘정말기록당(정릉마을기록이야기마당의 준말)’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단어조차 생소했던 아카이빙을 이제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스스로의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공영역은 민간에게 기준이 전형이 되어주고, 민간은 공공에게 삶의 가치와 지향을 전달하게 되는 구조가 원활하다면 상호 유익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국민들은 정치 권력자에게 단지 '통치'의 대상이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극복했다.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국민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 되었고,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지방정부 또한 '협치'를 표방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발전은 협치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중심', '주민 주도'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 의식의 성숙, 제도의 보완, 공공기관의 정책변화라는 선순환 구조는 아카이빙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일상의 가치와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사회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자발적인 아카이빙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와 같은 필요는 머지않아 정책과 제도를 낳게 할 것이고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과 체계적인 운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의 역할

아카이브란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의미하며, 가치 있는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장소, 기관, 기구)을 뜻하기도 한다. 가치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쓸모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역사적,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정보적 가치 등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잘 보존, 관리하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민간 아카이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록관리법에서 ‘민간기록’에 대한 조항은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정도이다. 2019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에서는 미비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내용을 제46조2로 신설하였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⁸⁾ 이 조항으로 인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다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이정은 2020, 124). 또한 기록관리법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②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상 민간주체를 기록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국가기록원이 하는 민간기록수집업무의 대상 또는 협조자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의 ‘비전’은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라고 표방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주체로 정부를 설정하고, 국민은 기록을 서비스 받는 입장으로 설계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기록원의 ‘주요 임무’ 또한 “국가 주요기록물 수집 및 체계적 보존·관리, 대국민 기록정

8)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보 제공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환경변화에 부응한 기록관리 정책·제도 운영 및 각급 기관 협력·지원”으로 제시하고 있다.⁹⁾ 이처럼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목적이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기록의 생산, 관리, 활용의 주체라는 인식이 국가 기록관리 정책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하는 기관이다.¹⁰⁾ 사회전반에 걸친 민간 아카이빙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방법은 공공영역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세부 분야별로도 다양한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록관리법 체계와 내용을 개정하는 정도로 대응할 수 없을 공산이 크다.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포괄적으로 개검토하고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¹¹⁾ 특히 마을공동체의 경우에는 행정적 성격의 기록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생산되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필요하다면 국가기록원 및 행정안전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정부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 분야를 전담할 조직을 갖춰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단절되었던 기록관리 제도와 전통이 비로소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으로 부활되었다. 그 후 20년 가량 부단한 노력을 거쳐왔으며, 아직 많은 과제가 있지만 공공영역은 기록관리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단

9) <http://www.archives.go.kr/next/organ/vision.do> (2020. 7.1 검색)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목표 및 임무' 참조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조항 참조

11)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에 대한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이 참고로 논의되기는 하나, 이와 같이 기존 시설을 진흥할 목적의 법 보다는 민간 또는 마을아카이브를 새롭게 만들고 문화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여러 분야의 '촉진법' 사례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아카이빙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록관리법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은 민간 아카이브 및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기관이라고 본다. 현재 기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곳은 현재 경상남도(2018)와 서울특별시(2019)의 두 곳이다. 모두 주민기록을 수집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설립 초기이며,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앞으로 활동이 본격화 되는 시기에 주민기록 생산 환경마련, 수집과정의 주민 직접참여 등 아카이빙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명실상부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기록활동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기록주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한시적인 ‘주민기록단’ 운영 정도를 넘어서 지방기록관 운영의 상시적인 협력 파트너로 주민들이 활동한다면, 지방기록관 소장기록물의 대상확장, 실질적인 민관협력, 지방기록관 운영의 효율화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²⁾

이와 더불어 기초지자체의 기록관에 대한 논의도 재고되기 바란다. 국내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의 기록관은 ‘1인 기록관’이라는 자조적 표현으로 불리운지 오래이다. 격무와 겹무에 시달리는 지방기록관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이 민간영역 아카이빙에 역할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지방기록연구사(기록관리전문요원)들에게 무언가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기록관이 명실상부한 기록관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기본

12) 예를 들어, 2020년 7월 현재 경기도 군포시 군포문화재단의 아카이빙 시민교육 프로그램 중급과정에서 ‘코로나-19와 일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사진기록을 수집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소재 모 방송국에서 시민기록활동가를 모집하여 ‘코로나-19 사진기록 수집’을 계획하고 있는 등의 사례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록활동이 공공기록관과 상호 보완적으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적으로 부여된 공공기록관리 업무와 더불어 민간 및 마을공동체의 기록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식변화와 인력, 자원,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재단, 문화원 도서관 등 각급 문화기관들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인 활동에 더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카이빙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아카이빙 지침 마련, 보존환경 마련, 전담 인력 마련 등 문화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기관만의 노력으로 어렵다면 관련 지자체 및 지자체 기록관과 협력을 통해 민간 아카이빙을 공론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체이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할 방안을 모색하기 나아가 할 것이다. 뜻있는 소수가 희생적으로 하는 활동으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주위의 여론을 형성하고 평이한 활동을 나누어 하는 등의 마을캠페인적 성격의 활동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 문화기관과 지자체에 아카이빙과 관련된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카이빙의 본질에 부합하게 활동공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관리대상 기록을 확보하는 단계,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단계, 원활하게 활용하는 단계를 잘 설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¹³⁾ 우선, 기록의 자격(資格)을 갖추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자격이란 일정한 일에 맞는 조건이나 능력을 말한다. 기록의 3요소 즉,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을 정확하게 확보하자는 것이다. ‘내용’이란 기록에 담겨 있는 문자, 숫자, 이미지, 소리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말한다. ‘구조’란 기록의 내용을 눈에 보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적 양식이다. ‘맥락’은 기록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온 환경과 정황 및 기록의 의미를 이

13) 필자의 경우 주민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재에서 ‘아카이빙의 3격(格)’이라는 표현으로 후술하는 자격, 골격, 품격을 강조하기도 한다.

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정보 등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의미 있는 공동체 내부의 회의나 주민활동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위의 요소들을 갖추어 놓지 못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관련 인물을 찾아 탐문하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골격(骨格)이다. 말 그대로 뼈대다. 기록관리의 뼈대는 기록, 정보의 조직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물성에 따라 정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조직화된 기록과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분류체계는 해당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모양을 조망하게 해주기도 한다. 대상기록의 범주, 그 내용과 유형 그리고 규모, 결국 해당 아카이브의 정체성과 지향을 보여주는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품격(品格)이다. 기록의 본질적 성격과 품위를 확보하는 일이다. 아카이빙은 기록물을 재현 가능하도록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아카이빙의 궁극적 활동이 기록물 자체에 집중되어서는 본질을 잃게 된다. 기록물의 진정한 가치는 기록물이 품고 있는 내용과 맥락에서 나온다. 그 내용과 맥락은 저절로 보이기도 하지만,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보다 풍부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기록물의 내용과 맥락을 살핀다는 것은 곧 사람의 흔적으로서 기록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의 관계에 역할을 했는지, 현존하는 상태와 의미는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록을 통해 사람과 사람관계를 들여다보는 행위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희로애락을 겪고 살아왔는지, 과정의 교훈은 무엇인지,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미래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아카이빙의 진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활동가들은 수시로 아카이빙 방법에 대해 주저하게 된다. 이렇다할 만한 참고사례나 지원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아카이빙 과정에서 적어도 위에서 제시한 기록의 자격, 골격, 품격을 확보하려는 활동을 추구한다면, 주민 아카이빙 활동의 결과로서

의 기록물이 공공의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될 최소한 요건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 아카이빙은 단순히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자원을 획득하여 문화력을 확보하는 일이고, 지식정보를 모아 사회적 자산을 축적하고, 삶의 흔적을 재료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생산적인 작업이다. 물론, 민간영역에서는 보존이 큰 과제이기는 하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재원, 공간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분야는 공공영역과 협력하며 그 대안이 정책과 제도로 마련되어야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아카이빙 활동가들의 연대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초기 마을공동체 단위별로 진행되어 온 활동이 타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모범사례에 대한 호기심, 지역 여론형성과 지자체 설득을 위한 사례 발굴, 실질적인 인적교류 등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필요가 활동가들 사이에서 공감을 형성하면서 2019년 ‘전국 기록활동가 네트워크 파티’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¹⁴⁾ 행사의 주요 내용은 각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강원도 지역의 기록활동가들에 의해 ‘강원기록문화협의체’가 결성되었다. 이 같은 연대는 활동의 필요에서 비롯되었고,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영역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외형적 연대는 물론이고 내용적 연대를 함께 하고 있어서 민간아카이브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점이 되고 있다. 향후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역간 아카이빙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많은 지역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14)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서울 정말기록당, 청주 두껍말기록단이 협력하여 2019년 7월 3일(수) (서울기록원 2층 컨퍼런스홀), 10월 7일(월) (청주시 문화산업단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4. 맺음말

1999년 기록관리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해 온 우리나라 현대 기록관리 제도는 상층에서 결정하고 하부단위로 전파되는 전형적인 하향식(top-down)경로를 거쳤다. 오랜 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수동적이고 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공공분야에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정부업무의 효율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기록관리제도를 도입했던 우리의 상황이다. 민간영역은 상향식(bottom-up)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카이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제 주체들이 필요성에 따라 형편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사회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민과 관의 두 축이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상승 발전하는 것이 필연이다. 기록관리분야도 그렇다. 민간영역의 아카이빙 논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발전과 확산을 기대하게 된다.

민간 아카이빙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우선 현장에 필요한 ‘민간 아카이빙 방법론’을 적절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록관리학(archival science)은 엄연히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는 분야이고, 국내 20여 개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에 학과를 개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관련 학회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에는 전문가로서 기록관리직 정원이 확보되어 있기도 하다. 학계에서 민간영역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대체로 의미와 방향 설정, 사례조사 및 분석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민간영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아카이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아카이빙 현장에서는 방법론에 대한 갈증이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아카이빙에 대한 오해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야 비로소 관, 이론, 현장이 만나고 있다. 서로 만나 지혜를 모아 정답을 구해나갈 차례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기록물 소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록물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다양하고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없는 기록은 아카이빙 된 것이 아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을 생산하거나 수집하더라도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이 있어야 한다. 민간에서 장기적으로 아카이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대상 지자체가 가치있는 관내 민간기록의 장기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도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로 분산보존을 추구하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영구보존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설립을 시작하고 있는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초기부터 민간기록 보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에 있어서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기록은 태생적으로 공공의 성격을 가지며, 공유되었을 때의 영향력은 폭발적이다. 기록활동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사례가 미미한 것은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방식,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장기적인 민관협력사업의 사례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소위 '행정마인드'의 단면들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 아카이빙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기록관리 방법론으로 민간기록관리를 해결할 수 없듯이 관성화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행정적 사고와 사업방식으로 민간기록관리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사고와 사업방식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그 중하나가 본문에서 제시한 지방기록관과 주민의 파트너 쉽 형성이다.

한 사회가 민간영역의 기록을 관리하는 환경을 갖춘다는 것은 민간의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공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일상과 공동체의 관계를 담고 있는 기록이 공공의 자원 되어 현재와 후대에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존중되며, 이들이 사회구성의 주역으로 공인되는 과정이다. '주민 중심', '주민 주도'는 더 이

상 표어가 아니다. 민간 아카이빙은 이렇게 우리 사회 진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11). 일상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곽건홍. (2020). 비정규노동 수기와 노동의 기록화. 『기록학연구』, 64, 5-25.
- 김익한. (2010).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151-172.
- 김익한. (2018). 왜 다시 기록관리 혁신인가?. 『기록학연구』, 55, 165-208.
- 설문원, 김영. (2016).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 평가론의 재조명. 『기록학연구』, 48, 209-251.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4.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이경래. (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51-82.
- 이경용. (2020). 일본의 지방아카이브 연구. 『기록학연구』, 64, 93-118.
- 이경용. (2019). 지방아카이브의 역할. 『기록학연구』, 59, 129-157.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 시론-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 이영남. (2012). 공동체 아카이브의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영남. (2018). 국가기록혁신과 기억담론. 『기록학연구』, 56, 49-80.
- 이영남. (2020). 일상생활과 기록. 『기록학연구』, 63, 167-225.
- 이정은, 김유경, 김진. (2020).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구. 『기록학연구』, 64, 119-155.
- 장대환, 김익한(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 『기록학연구』, 59, 277-320.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2019). 지역 역사문화 아카이빙을 위한 김포 북변동 스토리텔링 사업 소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275-281.
-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28, No.2, October 2007, p.153.